한국경호경비학회 – 제57호(2018): 231–252

투고일 2018. 10. 15 심사일 2018. 12. 10 게재확정일 2018. 12. 10

경호·경비 용어의 개선방안

김 홍 성

경호·경비 용어의 개선방안

김 홍 성*

〈요 약〉

우리는 현재 경호(警護)·경비(警備)에 관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오랜 시간 외국의 단어와 어휘를 그대로 인용, 사용하여 왔다. 자국의 언어가 분명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의 전달 면에서 외국적 색체가 짙고, 또한 경호경비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미약하게 만들고 있다.

확실하고 뚜렷한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로서 독립적으로 표현된 용어가 없을 뿐 더러 그것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여 외국어를 그대로 수용 사용하고 있음은 우리말의 적절한 경호경비에 관한 용어 선택의 부재(不在)를 불러오게 하였다.

현재 경호경비를 '보안(保安), security' 로 포괄적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고유의 말(한글)에도 경호경비의 뜻과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음에도 영어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영어권의 힘이 컸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영어를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잦아졌으며,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발달한 문명이나 문화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우리 국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 이다.

이러한 실태를 전제로 경호경비의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찾는 작업이 절실하

다고 하겠다.

지금껏 우리는 경계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의 용어로 "경호경비, 시큐리티'(Security), guard, protect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의 용어로 우리말의 '지킴'이 있다.

지킴은 현재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안전한 상태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위해로부터 예방과 경계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생활 안전지킴 등등처럼 경계하고 보호함을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뜻하는 ‘지킴’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지키는 사람을 ‘지킴이’ 라 한다. ‘지킴이’ 란 ‘지킴’ 이라는 단어에 ‘사람’을 의미하는 우리말 접미사 ‘이’를 합친 단어다.

‘지킴’은 감시의 의미와 보존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지킴’ 용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용어의 사용 및 현실과 부합된 정서적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호・경비의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의 용어로 바꾸었을 때 그 의미와 여러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지킴’ 이란 용어가 적당하다 판단된다.

주제어 : 민간경비, 보안, 경호, 지킴, 경호경비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어학적 분석과 이론
Ⅳ. 지킴용어의 적절성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역사는 1945년 해방이후 70여 년 정도이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비교하면) 조금은 어설프기는 하였으나 제대로의 격식을 갖춘 민간경비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민간경비업체는 지난 1985년 55개, 1990년 252개, 2008년 말 3,043개 였다.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여 2015년 말 현재 업종별 5041개이다. 이를 살펴보면, 시설경비 4186개, 호송경비 38개, 신변보호 541개, 기계경비 139개, 특수경비 137개, 법인수 4292개에 이른다[1)]

1) 한국경비지도사협회, 2015년 허가기관별 경비업체 현황.

이처럼 민간경비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기능과 역할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경호경비 대한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하고 외국어를 그대로 수용 사용하고 있거나, 한자 음에서 따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우리말의 적절한 경호경비에 관한 용어 선택의 부재(不在)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 용어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여러 논문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민간경호경비 용어의 개선에 관한 논문에서 이창무(2010)는 '경호'용어의 문제점과 '민간경비'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민영'용어의 적절성과 '보안'용어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결국 '경비'대신에 '보안'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김태민, 2013). '경비산업의 실효적 법 개정 사안'에서 용어의 개선과 관련 현행 경비업은 민간인이 경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민영'이라는 용어의 채택이 합당하다 라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논문에서 경호경비에 관한 용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만 정작 우리말로의 용어 개선에 관한 연구는 없어 보인다.

최근 들어 우리정부에서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대체어로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관계부처 합동 공공언어 개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은 외국어, 한자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의 사용을 개선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책자료, 행정자료,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은 행정용어[2] 100개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도 그 빈도가 떨어지는 한자어, 로마자 약어 표기로 전달력이 떨어지는 외국어, 음차 표기로 소통성이 떨어지는 외국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필수 개선 행정용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및 홍보품 등을 배포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는 국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국

2) 거버넌스–민관 협력, 협치, 관리/규제 프리존–규제 자유 구역/니즈–필요, 수요, 바람/드론– 무인기/바우처–이용권/아웃리치–현장지원활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처벌 제도, 즉시 퇴출제/AI–인공지능, 조류독감/MOU–업무 협약, 양해 각서.(국립국어원, 보도자료, 2018.10.9.)

립국어원, 보도자료, 2018.10.9.)

이처럼 용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순우리말의 현대적인 경호경비 용어가 없으므로 그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간절하기에 본 논문에서 그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노력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임이 틀림없다.

인간의 욕구를 이해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Abraham Maslow,1908~1970)[3]는 욕구 5단계설에서 "인간은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거나 성취되면 2차적 욕구인 안전(safety)에 관심을 갖게 된다"하였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계속적인 보존의 욕구를 의미한다. 현대는 물론 우리의 원시시대, 그 후의 고대 삼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에도 인간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키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조직과 기구를 두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대모달[4], 말객 백제의 5부, 위사좌평[5], 병관좌평, 내관 신라의 시위부[6], 9서당, 금군 고려시대의 무신집권기의 도방, 서방, 마별초, 야별초(삼별초)[7] 조선시대의

---

3) 메슬로우(Abraham Maslow,1908~1970)욕구5단계설: 생리적욕구(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등) 2차적욕구: 안전의욕구(위험・고통으로부터의 회피, 안정 등) 3차적욕구: 애정의 욕구(애정, 친화, 소속감 등) 4차적욕구: 존경의 욕구(승인, 존경, 지위, 명예 등) 5차적욕구: 자아실연의 욕구(자기완성, 삶의 보람 등). (안영규, 2008:18~20)

4) 대모달: 고구려시대의 무관직이다. 군부대에 대한 명칭은 일반적으로 당(幢)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광개토대왕비'에 왕당이 보이고 무관직의 하나인 대모달(大謀達)을 대당주(大幢主)라 한 것으로 짐작된다.(김창호,2006:29)

5) 위사좌평: 숙위병사(宿衛兵事)관계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위사좌평 설치시기를 260년 고이왕 27으로 기록되어 있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6) 시위부(侍衛府): 궁성의 숙위 및 국왕 행차시에 호종(扈從)과 경호(警護)를 담당한 부대이다. 시위부는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 가장 앞에 기술되어 있고, 여타의 군사조직을 묶은 23군호(軍號)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왕 직속의 특수부대라 할 수 있다.(장철원, 2003)

7) 야별초: 고려무신집권기에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경호부대이다. 야별초의 설치목적에서 나오는 '포도', '금폭'의 임무는 "고려사"에 "나라 안에 도적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막는 도적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순수한 도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盜賊) 또는 '적(賊)' 등으로 불리는 농민폭동군도 포함되었던 것이다.(김창호, 2006:89)

10사, 별시위[8], 내금위, 호위청, 어영군, 갑사, 친위대 등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조직은 예로부터 궁성이나 임금의 안위를 위하여 두었던 여러 '지킴' 조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으로 오늘날의 지킴문화와 제도가 정립되고 현대적 감각과 현대가 요구하는 지킴체계로 발전하여 왔으나, 그 용어에 있어서는 발전된 우리만의 적절한 대체용어를 갖지 못 하고 경호경비(警護警備)의 용어처럼 한자어를 사용한다거나, Security, guard, protect와 같이 영어를 사용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호경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제도와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 오늘날 까지 순수 우리말로 된 경호경비의 용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현대이전(以前)의 경호·경비의 유례(선사시대~1945년)

선사시대에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이전 경호는 구석기, 신석기시대 농경 이전인 원시시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땅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나뭇가지 위나 동굴 속에서 생활함으로 맹수나 다른 씨족의 공격으로 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주거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경호경비의 보호영역은 원시사회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자연(自然)의 위험과 인간의 위협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동물을 사냥하고 나무열매를 따먹는 단계의 원시생활이 씨족, 부족을 이루어 가면서 계급이 없는 수평적 평등사회에서 계급분화가 일어나 수직적 관계의 지배자가 생겨남에 따라 부와 권력을 독점 하려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자들 사이에 안전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호대상자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출현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약 70만 년 전인 초기 구석기 시대로 추정한다. 평양시 부근 상원검은모루 유적이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이다. 이들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동물을 사냥하고 자연그대로의 열매를 따먹는 식량채집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어서 도구의 발달로 인한 생산력의 증가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지배자의 탄생을 낳게 하였

8) 별시위: 1400년(태종 즉위년)에 고려말 이래의 성중관(成衆官)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한 국왕의 친병이었다가 뒤에 위병(衛兵)으로 바뀌었다. 처음 별시위는 국왕의 측근 시위병이기 때문에, 양반 자제 등의 지원자가 엄격한 취재시험을 거쳐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초기 성중관(成衆官)의 하나로 태종 5년(1405)에 6조(六曹)의 직무 분담에 따라 병조에서 관리하였고 동왕12년 (1414)에 내금위·내시위와 함께 3군의 중근에 소속시켰다.(정청주, 1983:4~10)

고, 이는 곧 경호대상자의 출현을 의미하였다.

생산력의 증가로 부의 축척이 가능해 지면서 경호대상자 즉, 정복자가 나타나고, 사회가 계급화 되어갔다. 고인돌은 이러한 사회를 반증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묘를 뚜껑돌로 덮는 형태로 그 무게가 70여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을 들어 옮길만한 인력동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富)와 권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배자의 안위를 책임지기 위한 사적, 공적 개념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도 권력자의 안위를 위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왕권강화나 지방호족들의 중앙집권화와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호위하며 지키는 자 들이 필요했던 것도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 이었다. 그 당시엔 제일먼저 성곽을 지키는 군사적 의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었지만, 점차 세분화 되고 조직화 하여 독립된 기구로 자리매김 하였다. 당시의 군사조직은 왕권을 수호하고, 왕의 안위를 위한 경호조직과 다름이 없었다. 궁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 권력자를 지키는 활동이며, 외적과의 전쟁 중 승패는 그 지배자의 생사와 관련된 군사 활동이고 곧 경호활동인 것이다. 군사적인 업무는 개인의 안위 이상으로 국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의 안위 활동의 주체는 대부분이 군인 이었다. 때문에 군사제도가 곧 현대의 경호제도에 해당된다. 경호의 의미와 군사제도는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현대국가에서 군대의 의무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데 있으나, 이때의 군사의 역할은 왕의 권좌를 유지하고 왕실을 보호하는 사병집단으로의 역할에 존재의 의미가 깊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문헌기록상 등장하는 최초의 고대국가는 고조선이다. 고대사회[9]에서 궁궐에서 군주를 호위하며 지키는 제도 및 '지키는 사람'을 숙위(宿衛)라 하고 "주례, 사기, 한서" 등의 중국의 사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적 관료제 양반사회로서 왕을 경호하고 궁궐의 경비를 하기

9) 고대사회: 최초의 고대국가는 고조선(古朝鮮)이다.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기원전 233년 전에 단군이 건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보통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형성된다는 점을 본다면 아직 이 기록을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오지 않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관자(管子)', 전국책(戰國策), '위략(魏略)' 등과 같은 중국문헌에 의하면 고조선은 늦어도 기원전 4세기에 등장하여 중국의 제(齊), 연(燕) 등과 교섭하면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창호,2006:19)

위해 왕과 궁궐의 숙위를 담당한 금군(禁軍)과 왕경을 지키기 위한 오위(五衛)가 있었다. 이들은 평소에는 왕의 거처를 호위하고 왕의 행차시(行幸時)에는 그 주변을 경계하였다.

태조시대에는 (김창호, 2006) 성중애마, 태종대의 경호를 주 임무로 하는 별시위를 창설 하였다. 또한 내금위·내시위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무예가 뛰어난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신분이 우월한 소수 정예부대로써 왕의 행차를 비롯하여 왕이 움직이는 경우 반드시 대동하였던 명실상부한 국왕의 최측근 경호부대라 볼 수 있다. 성중애마, 내금위, 내시위는 주로 측근에서 국왕을 호위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반면에 갑사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군액을 거느리고 궁문을 파수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였다.

정조의 행차 시 노상경호의 임무를 진 당마를 일정지점에 배치하였고, 광역 경호의 일환으로 척후를 두었고, 교통의 요지에는 복병을 배치하였다.

오늘날 대통령의 행사장 참여시 이루어지는 22경비대(경찰), 33경호대(군 헌병대)의 외부행사 담당과 외곽경호를 맡은 55경비대(군 수방사), 202경찰경호대라 할 수 있겠다.

2. 현대 경호·경비의 성립(1945년~현재)

우리의 경호·경비의 역사는 일제로부터의 해방된 1945년 이후 70여년이다. 1949.2.23. 창덕궁 경찰서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창설 되었다. 1949.12.29. 내무부령으로 「경호규정이 제정되어 "경호"라는 용어를 〔표 1〕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1960.6.28. 경무대경찰서폐지 하고 서울경찰국 경비과에서 경무대 경호를 담당하였다. 1961.6.1.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군에서 맡던 경호업무를 흡수하였고, 1963.12.14. 제3공화국 발족되면서 「대통령경호실법」 공포. 같은 해 12.17. 박정희대통령취임과 동시에 독립된 대통령경호실이 발족되었다.

경호경비의 발전은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미군납 경비를 시작으로 현대적 민간경비 형태를 갖추며 발전 하였다.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한국의 경비산업은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체계적인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인해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커다란 역할을 지속해 왔다. 또한 제도적 시스템도 발전하여 1995년 5차 개정에 신변보호업무를 추가하였고, 1999년 7차 개정에는 경비업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1년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여 경비업종을 확대 세분화 하였다.

앞으로도 민간경비는 다양화와 함께 그 영역은 더 넓게 확대 될 것이다.

경호의 업무는 경비업법 제 2조의 1항에서 경비업의 용어 정의에서처럼 신변보호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정의한다.

경호는 경호를 받아야 할 사람 즉, 경호보호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재산과 생명의 온전함을 유지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는 안전활동의 제반작용을 의미한다.

〈표 1〉 경호(警護)에 대한 용어사용 사례

사전적 의미	警護(경계할 경, 보호할 호)경계하고 보호함.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유선목, 2017:10)
대통령 경호법 의미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학문적 정의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경호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도상 경호를 뜻한다.(김두현, 2006)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경호활동에 필요한 정보, 첩보수집 및 인원 장비 운영을 통한 경계활동까지 포함하여 경호대상 인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장명진, 2003)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활동이다.(이상의, 2008)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경호 주체의 안전확보 활동이며, 시간적 개념으로 위험발생을 기점으로 한 경호 주체의 안전확보 활동이며, 시간적 개념으로 위험발생을 기점으로 한 사전예방활동과 사후제거활동, 거리적 개념으로 근접호위활동과 지역적 경비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민형 외, 2008)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각종 위해로 부터 방지하는 경찰활동으로서 경호대상자가 통과하는 연도와 숙박 장소, 열차, 선박, 항공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경계하여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활동(김상호 외, 2004)
경찰학 사전	호위와 경비를 의미하며, 정부요인과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활동

한편 경비의 구분은 민간경비와 공경비 그리고 광의의 경비와 협의의 경비로 살펴볼 수 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로 나누어 볼 때 민간경비의 영역에 속하는 경비는 공경비와 함께 경비의 대상자나 경비 장소에 차이가 있다.

한편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둘 모

두를 민간경비의 영역에 포함해야 하며, 굳이 이 둘을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 다시 말해 민간경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영(民營)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경비 자체인 시민단체의 방범활동이나 주민들의 자율 방범대 활동에 이르기 까지 자경적 방범 활동 모두를 민간경비 영역에 포함시켜야 타당하다.<표 2>

지금까지 학계이론이 그 둘을 구분하여 기술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을 다른 범주로의 이해는 맞지 않는다. 곧 포괄적 개념의 또는 광의의 민간경비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경비활동 모두를 공경비와 구분지어 개념화 한다면 민간경비에 관한 적절한 답이 될 것이다.

민간경비는 신변보호, 경계·순찰, 호송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적경비와는 주체자의 구분에 따라 대치되는 개념이다. 즉, 민간경비는 공적인 주체가 아닌 사적인 관계에 의한 안전관리 이다. 그러므로 경비를 필요로 하는 특정인의 요청에 따라 경비업체와 계약에 의한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보통 민간경비에서의 서비스는 의뢰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토털(total)안전을 제공한다. 이는 곧 고객의 신변과 재산을 동시에 보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2〉 경비(警備)에 대한 용어 사용 사례

사전적 의미	警備(경계할 경, 갖출 비) 만일을 염려하여 미리 방비함.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정도익, 2007:4)
군사용어사전	폭도나 적성 분자의 폭동에 대하여, 국내 치안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군으로 실시하는 제반 행동
판결문에서의 의미	인명과 재산을 인위적'자연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 국가시설 및 중요시설을 경계,순찰·방비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어하는 호위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70.9.17. 선고 70도 1391판결)
학문적 정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범죄 등 동안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또는 재해 및 혼란 등에 의하여 공안을 해하는 사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경찰활동이다.(임대용, 2002)
경찰학 사전	사전수비의 목적 또는 변한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사전에 취하는 경계와 방비

경비업법 제2조에서 민간경비 업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를 경비업법에서 그 업무를 구분하지만 보통의 경비계약서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경비 의뢰인 주변의 신변 및 시설을 지키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상의 구분은 실제의 경비현장에서 차이를 보이며, 경비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그 구분은 더욱 더 모호 해진다.

공경비는 경찰, 군부대, 경호처 등의 국가기관 주체의 경비 작용을 말하며, 공권력을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행사 할 수 있으며 공공의 질서 유지는 물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와 수사활동 이는 곧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활동의 일체를 말한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반면에 민간경비는 사인끼리의 계약관계를 근간으로 한다. 이는 곧, 경호경비 의뢰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 또는 공공의 재산 및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이다.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영리추구를 위한 경비업무와 그와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 자경적 성격을 띤 경비체계를 말한다.

민간경비는 계약에 의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성격의 업무는 물론이고, 경비업 제2조에 나열한 경비업무를 하는 민간경비업체는 물론이고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 자체경비도 민간경비의 범주에 포함 된다.

Ⅲ. 국어학적 분석과 이론

외국어가 우리의 말과 혼합되어 사용되어져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그 체계를 살펴보면 '어버이 – 부모(父母) – 페런츠(parents)' 처럼 '우리말 – 한자어 – 영어'의 3원체계로 이루어진 것과 경호경비의 용어처럼 한자 – 영어 표기로 되어있는 '경호경비(警護警備) – Security'처럼 2원체계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10] 이처럼

10) 또는 '경호(警護) – Protect, 보안(保安) – Security처럼 한자 – 영어의 2원체계로 표기 된 것도 있다.

3) 법제처의 영문법률번역을 보면 경비업법은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로, 경비업법은 'security business'로 번역하고 있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도 'Presidential Security Act'라고 번역하고 있다. 동 법에서 '경호'의 정의도 'security service'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서는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를 3. 'Performing guard duties, guard of important persons'로,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에서는 3. '경비·

경호경비의 역사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순 우리 국어로의 용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립국어원, 법제처3)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용어도 한자어로 되어있는 표현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의 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말을 사용함으로 그 용어가 주는 의미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태민(2013)은 현재 민간경비 산업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비'라는 용어의 사용 때문이다. 국민들의 사회인식의 측면에서 현재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경비업무를 수준이하로 낮게 본다는 점이다. 즉, '경비원'이라고 하면 예전에 단순하게 시설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던 아파트 경비원을 연상하게 될 뿐 아니라 할 일 없거나 나이 들어서 돈 벌수 있는 직종 등으로 손쉬운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성언(2004: 2)은 '민간경비'라는 용어가 이미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널리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개념은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례대로 'Private security'에 대한 번역어로서 '민간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창무(2010:219)는 김성언 교수가 개인의 신변이나 재산의 보호, 심리적 평안의 유지 등 포괄적인 안전추구 행위와 상응조치들을 지칭할 때는 '경비' 대신 '보안'이란 말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타당한 견해로 보고 있다.

이처럼 앞선 연구자들의 경호경비 용어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경호경비의 용어는 우선적으로 실효성(實效性)있는 용어의 사용과 현실에 맞는 용어이어야 한다. 즉,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용어의 사용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효적인면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국립국어원(2007)은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꾸준히 순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은 줄지 않고 있어 전국 국어 상담소를 통해 1948명(내국인 : 1579명, 비내국인 : 399명)에게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인지도(들어 봤는지의 여부). 이해도(의미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 사용도(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지의 여부) 및 태도(국어생활에서 이 말을 써도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살펴보고 외래어 정책에 참고하고자 한 조사다. 가이드라인, 갭,

요인경호'를 3. 'Performance of guard duty, security escort of very important persons'라고 번역하고 있다. (최은하, 김나리, 유영재, 2017:37)

내비게이션, 옴부즈맨, 유비쿼터스, 보이콧 등 100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100개 모두 인지도가 50%가 넘었으면(89개 항목이 70%이상), 96개 항목이 이해도가 50%가 넘었다. 사용도 또한 호스티스, 스크린도어 등 91개 항목이 50%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외국어까지 잘 알고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말을 써도 좋을지에 대한 물음인 태도 부분에서는 41개 항목이 50%를 넘는 결과를 보여, 많은 국민들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여러 외국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남택승,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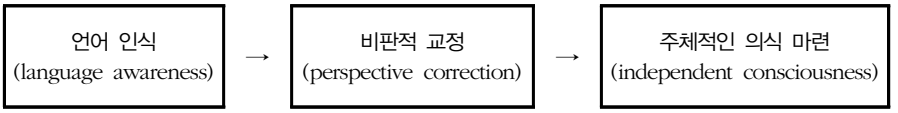

〈그림 1〉 국어의식향상을 위한 단계

위 <그림1>에서 1단계인 인식 단계는 언어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즉, 언어 사용의 모습이나 원리, 문제점 등에 대한 현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서, 언어 사용에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지나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다. 2단계인 비판적 교정 단계는 이 단계에서 가질 것으로 목표 삼는 교정된 언어 의식은 막연한 문제의식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언어 의식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어에 대한 의식을 주체적으로 내면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다.(남택승, 2011)

한편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정비 기본 원칙(법제처, 2009:13-14)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 법령문은 직접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한다.
- ○ 새로운 입법을 할 때에 기존의 법률 용어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으면서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혼란의 여지가 없다면,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태민, 2013)

Ⅳ. 지킴용어의 적절성

경비의 용어는 사경비에서 민간경비 도입 초기부터 사용되었고, 미군으로부터 반입된 군납품을 지키기 위한 경비업무를 시작으로 도입된 후 그 주된 기능의 명칭이 경비 중심이었던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여 진다.

또한 경비용어의 사용에서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민간경비 분야의 급속 한 발전을 이뤘고 법제의 필요성에 따라 1972년 '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국군이라는 명칭대신 '국방경비대'라는 명칭을 사용 하였다. 이처럼 경비라는 명칭은 군에서 병력과 시설, 물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 관련 법 제정 작업을 하면서 일본 경비업법을 많이 참조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19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이창무, 2009) 이처럼 외국의 문물은 외국의 말과 용어를 함께 동반하여 국내에 들어온다. 그 외국어·외래어의 말과 용어를 국어화 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교양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에서 민간경비의 용어에 대한 우리말로의 개정 의지는 외국의 문화적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국어의 독립성 면에서도 꼭 필요함은 물론, 경호경비 용어의 적절한 우리말로의 대체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하면서 외래어 중에서 순수 우리말로 고칠 것을 찾고 있다.

이홍식(2007)은 국민들은 외국어·외래어라도 비교적 자주 접하는 낱말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지만 어렵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거나 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호·경비의 용어도 일상에서 오랫동안 '보안', '시큐리티'(Security)로 혼용 사용해 오면서 어렵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한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호의 의미로 'protect'를 사용한다. 'protec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보호하다, 지키다, 방어, 막다, 살리다" 이다.

한글사전에서 '지키다'를 영어로 'protect'라 표기한다. 경비의 개념은 경(警 : 경계할) 비(備 : 갖출) 즉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이다. 이렇듯 경호경비 라는 용어는 개념적인 면에서 현대어를 편의상 사용한 것이며, 그 의미도 시대별로 다양한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의 용어로 "경호경비, 시큐리티'(Security), guard, protect 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앞서 설명한 용어를 대신할,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의 용어로 우리말의 '지킴'이 있다.

지킴은 현재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학교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등등처럼 경계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지킴'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킴'은 경계(警戒)의 의미와 보존(保存)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따라서 경호 · 경비의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의 용어로 바꿔야 하며 '지킴'이란 용어가 여러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용어로 판단된다.

곧 경호· 경비의 의미와 모두 부합하는 우리말로 '지킴'이 적당하다 하겠다.

경비업법(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5가지로 정의 하고 있다.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경비업" 용어의 의미는 '경비'는 우리말의 '지킴'에 해당된다.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따르면 ① '업(業)'은 직업, 부여된 과업이라 하고, ② '업무(業務)'는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 하는 일. ③'일'은 무엇을 이루거나 대가를 받기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경비업"과 "경비업무"의 우리말은 → 지킴(경비)+일(업,업무) = '지킴일'이 합당하다.

가. 시설경비업무의 '시설(施設)'은 우리말의 표기가 없다. 때문에 시설의 우리말로의 용어의 선택은 할 수 없으므로 앞서 설명하였듯이 외국어가 우리말과 혼합되어 쓰여 져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 2원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설((施設)경비업무"는 시설(한자어)과 지킴(우리말)과 업무(한자)을 합성한 '시설지킴일'로 한다.

또한 호송(護送), 기계(機械), 특수(特殊)의 용어는 안타깝게도 우리말이 없어 한자어를 그대로 표기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변지킴업무에서 '신변(身邊)'은 우리말에 '몸'으로 표기 할 수 있어서 신변보호업무는 '몸지킴 일'로 표기가 가능하다.

나. 호송경비 업무는 '호송지킴 일'

다. 신변보호 업무는 '몸지킴 일'로 한다.[11]

라. 기계경비 업무는 '기계지킴 일'로 한다.

마. 특수경비 업무는 '특수지킴 일'로 한다.

'경비업자'에서 '업자'는 부여된 업무를 이행함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 라 할 수 있으므로 지킴(경비)+일(영업)+ 이(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지킴일이'라 써야 하겠지만, '지킴일이'은 의미의 전달 면에서 미약한 점이 있어 한자어와 우리말이 결합된 용어 '지킴(우리말)업자(한자어)'로 표기하여 '지킴업자'로 한다. '경비업법'은 '지킴'+ 업법(한자어) = 지킴업법으로 표기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법제명 및 사용 용어를 <표 3>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법제명 및 사용용어의 개선(안)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명칭	경호, 경비, 보안, Security, Protect, Guard	지킴		
법명	경비업법	지킴일법		
	경비원	지킴이		
	경비업자	지킴업자		
사용용어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시설지킴일	
		호송경비업무	호송지킴일	
		신변보호업무	몸지킴일	신변=몸
		기계경비업무	기계지킴일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업무	특수지킴일	
	대통령경호	대통령지킴	대통령지킴일	

11) 신변(身邊)의 뜻풀이는 몸과 몸의 주위, 몸은 우리말로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또는 그것의 활동 기능이나 상태임. 〈출처:국립국어원 대사전〉

Ⅴ. 결론 및 제언

우리는 경호경비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호경비에 관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거듭하여 학문적 발전도 이루어 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호경비에 관한 용어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법안의 개정으로 경비업계가 원만한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경호경비에 대한 '용어'의 문제는 그간의 경호경비와 관련 학술논문이나 전공서적에서 보여주듯이 경호경비의 외국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순수 우리말로의 용어 정립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경호경비의 개념마저도 확고히 정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용어의 적절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논리적 합의 없이 또한 무비판적으로 편의상 확대 재생산 하여 인용, 재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무(2010)에서 "'경비'란 용어의 사용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조사, 산업보안. 정보보안. 시큐리티 컨설팅 등 민간경비의 주요한 기능과 업무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포함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보니 융합보안과 같이 당연한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분야가 민간경비와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과거시기에 '경비'라는 용어가 정착돼 이러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만큼, 시대적 상황과 치안환경이 크게 달라진 현재 '경비'란 용어를 고수할 필요가 없고 수정이 필요하다도 보인다."라고 지적 하였듯이 '경비'에 대한 새로운 용어로의 수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겠다.

현재 일상에서 널리 퍼져 사용하고 있는 '지킴' 용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는 비영리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조직적 방범 활동은 물론이고, 경비업법상 허가를 득한 민간경비업자의 영업 행위 까지 포용하는 안정적이면서 정확한 용어의 정립에 있다 하겠다. 이로써 학교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생활안전지킴 등등처럼 사회적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킴' 용어의 사용은 민간경비와 관련하여 해결되지 못한 영역의 문제점 즉,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과 활동의 범위나 범주에서의 불확실한 경계의 문제점이 해결 되어

진다고 본다. 이로써 영리와 비영리의 경호경비 개념상 영역의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어의 정립이 완성되어 진다.

한편 순우리말로의 용어 정리는 자칫 경호경비의 후진을 초래한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쓰던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는 것은 혼란과 불편함을 동반한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우리의 전통적 지킴문화와 제도 및 역사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또 어떤 이는 경호경비 용어의 우리말로의 개선은 마치 북한의 언어를 인용한 듯한 느낌을 준다고도 하였다.

우리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그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경호경비의 용어에 있어서도 '지킴'의 용어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 그 자체인 만큼 '지킴'의 용어는 경호경비의 우리말로의 적절한 대체 용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킴' 용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용어의 사용 및 현실과 부합된 정서적 용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호경비의 용어로 Security, Protect, Guard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순수 우리말이 아니므로 '지킴'의 용어를 사용함은 우리말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효과와 함께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용어의 선택 인 것임은 물론 용어에 담겨있는 의미의 전달 면에서도 더 큰 효과가 있다 하겠다.

경호경비 용어의 우리말로의 대체에 있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는 순우리말이 없다는 한계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역사 속에 배여 있는 '지킴문화와 의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순수 우리말의 경호경비 용어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 본다.

참고문헌

경찰청 (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김상호, 김형만, 신현기, 이영남, 이종화, 이진권, 임준태, 전돈수, 표창원 (2004). **경찰학개론**. 경기: 법문사.

김성언 (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 치안활동의 선지유주의적 재편과 계약적 통치의 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환, 서진석 (2009).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서울: 백산출판사.

김지영 (2005).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창호 (2006). **한국경호발달사**. 서울: 백산출판사.

김태민 (2013). 민간경비산업의 실효적 법개정 사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0**(1), 123-144.

남택승 (2011). **국어 의식 향상 방안 연구: 외래어, 외국어 사용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법원 (1970.9.17). 선고 70도 1391판결.

법제처 (2009). 13~14.

서진석 (2004).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신명호 (2001).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계, '원행을묘정리의궤' 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7**, 111-139.

안영규 (2008).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황권 (2009). **민간경비학**. 인천: 진영사.

유선목 (2017). **경호경비분야 경호무도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방섭 (2010). **조선 정조대 장용영의 운영 실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왕무 (2007).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이윤근 (1989). **한국 사경비 발전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창무 (2009). 민간경비 용어의 수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 204-226.

장철원 (2003). **한국경호제도 변천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도익 (2007). **우리나라 민간경비교육 훈련의 실태분석과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청주 (1983). **조선초기의 별시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선우 (2008). **민간경비론**. 인천: 진영사.
최은하, 김나리, 유영재 (2017).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의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 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 33-5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curity Terminology

Kim, Hong Seong

we have long used foreign words in using the term for guard security despite the obvious existence of own language, the use of foreign terms is strong in foreign feeling in delivery. and also weakens the true meaning of security.

there are no terms expressed independently in korean, and we(they) are negligent in finding them and use the terms of foreign language. as a result, we(they) brought about a lack of choice in terms of proper security for our langage.

currenty, it is widely used as a security guard

even though there is an appropraite word that corresponds to the meaning and meaning of security guards in our words, we still use enlish expressions. there is because the English language is used for convenience regardless of weather the term is appropraite or not, and as the power of the English language is great amid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lt is easy to use english without thinking in terms of the use of terminology. ultimitely, however, this is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korean language.

with these reasons, we must find the term of security guards in pure korean language.

until now, we have used the terms 'guard, security, protect' as the terms security and protection

the term 'Jikim' refers to the korean language as a means to be vigilant and guarded. Jikim refers to the action of maintaining the current safe state.

Like school jikimi, children safety jikimi and environment jikimi, Jikim is already being used in many places.

Therefore, the term ‘guard’ should be changed to an appropriate Korean term, and the term ‘Jikim’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term in various sections.

so, ‘Jikim’ will be appropriate in korean, which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security guards.

the guardian here is called the Jikimi. Jikimi is a combination of the word Jikim and the korean pronounce ‘I’ which means people

Keywords: Private security, Origin of security, Security, Jikimi